시 보

선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024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93호 도시관리계획(송희마을 소공원1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94호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 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97호 도로구역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1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98호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 1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00호 양갑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01호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 2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45

회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25호 2022년「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계획 공고 ··· 4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6호선, 중로1-688호선) 사업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공고.열람 ··· 5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74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 6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82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공청회 개최 공고 ··· 6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84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공고(안) ··· 6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85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공고(안) ··· 6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8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6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8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6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9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원적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 6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93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 공고·열람 ··· 7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96호 공시송달 공고 ··· 7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98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7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00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8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00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81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20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82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31호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35호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 108

군 구

○ 강화군공고 제2022-524호 강화군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 147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39호 하천점용(신규)허가 ··· 148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93호

도시관리계획(송희마을 소공원1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송희마을 소공원1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송희마을 소공원1 조성계획)으로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7),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경관과 (032-770-620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4.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공원: 송희마을 소공원1)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32번지 일원
3. 면 적 : 568.00㎡
4. 도시계획시설(송희마을 소공원1 조성계획) 결정(최초) 조서[붙임 1]
5. 지형도면 : 시보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붙임 1]

도시관리계획(송희마을 소공원1) 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32번지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68.00	107.80	-	-	-	14	
공원시설	소 계		107.80	107.80	-	-	-	-	
	기반시설	소계	107.80	107.80	-	-	-	-	
		도로	28.10	28.10	-	-	-	-	
		광장	79.70	22.55	-	-	-	-	
	휴양시설		-	-	-	-	-	6	
	조경시설		-	-	-	-	-	-	
	운동시설		-	-	-	-	-	3	
	관리시설		-	-	-	-	-	5	CCTV포함
녹 지 및 기 타			460.20	-	-	-	-	-	녹지율 81.00%
시설율(%) (법정 20% 이하)			、시설율 : 19.00% 、녹지율 : 81.00% 、건폐율 : 0.00%						

나.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기)	비고
합 계		-	568.00	107.80	-	-	14	
기반시설	계	-	107.80	107.80			-	
	도 로	-	28.10	28.10	-	-	-	
	광 장	가	79.70	79.70	-	-	-	
휴양시설	계	-	-	-	-	-	6	
	연식의자	①	-	-	-	-	(6)	
운동시설	계	-	-	-	-	-	3	
	체력단련시설	②	-	-	-	-	(3)	
관리시설	계		-	-	-	-	5	
	안전휀스	③	-	-	-	-	(2)	
	안내판	④	-	-	-	-	(1)	
	CCTV	⑤	-	-	-	-	(1)	
	공원등	⑥	-	-	-	-	(1)	
녹지 및 기타		계	460.20		녹지율 : 81.00%			

다.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18.3	28.1				
신 설	소로	3류	1	1.5	7.5	11.9	진입로	공원경계부	중앙광장 가	
		3류	2	1.5	2.6	3.9	연결로	공원경계부	중앙광장 가	
		3류	3	1.5	8.2	12.3	진입로	공원경계부	중앙광장 가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94호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동구 창영동 21-15번지 일원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7)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67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11.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동구 창영동 21-15번지 일원	-	증)35,072.5	35,072.5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5,072.5	-	35,072.5	100.0	-
주거지역	소계	35,072.5	-	35,072.5	100.0	-
	제2종일반	17,657.9	-	17,657.9	50.3	
	제3종일반	17,414.6	-	17,414.6	49.7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변경)

구분	시설명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	15~25	국지	1820 (621)	대2-6	6호광장 (송림동)	일반		1970.02.09. 건고 제54호	
기정	소로	2	2	8	국지	232	소1-2	소2-18	일반		1964.12.17	
기정	소로	2	18	8~9	국지	384	중2-4	광2-1	일반		2010.04.26. 인고 제119호	
기정	소로	3	193	4	국지	18	소3-124	창영동 29-7	일반	창영동 23-23	2001.07.09	
기정	소로	3	5	6	국지	50	소2-18	소3-124	일반			
기정	소로	3	185	5~6	국지	36	소2-18	창영동 177-7	일반		1991.08.02	
기정	소로	3	186	6	국지	68	소2-18	창영동 177-6	일반		1991.08.02	
기정	소로	3	124	6	국지	420	광2-1	중2-4	일반		1997.01.06. 인고 제262호	
변경	소로	3	124	6~15	국지	425	소2-18	중2-4	일반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24	소로3-124	ㅇ 연장: 420m → 425m ㅇ 폭원: 6m → 6~15m	ㅇ 주변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도로 연장 및 폭원 변경

나)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주차장	노외 (지상)	창영동 22-8번지 일원	627.8	감) 627.8	-	1999.8.2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ㅇ 시설 폐지 - 위치 : 창영동 22-8번지 일원	ㅇ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을 위한 폐지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창영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창영동 21-15번지	1,028.8	-	1,028.8	1999.8.2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분야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층수	비고
			대지면적 (㎡)	연면적 (㎡)		
신설	공동이용시설	창영동 22-8번지	627.8	329.24	2	2층에 한함

※ 공동이용시설 위치 및 규모는 추후 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이용시설 상세 건축계획, 프로그램은 실시계획에 따름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사 업 내 용	A. 주민이 하나가 되는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 목 적: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회복 및 모임 공간 조성 - 내 용: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동작업터 조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B. 안심하고 걷고 싶은 “가로 공간” 개선 - 목 적: 안전한 가로 공간 조성 - 내 용: 교통정온화 설계, 가로환경 정비	
	C. 안전하고 빛이 있는 “안심 마당” 조성 - 목 적: 범죄 예방, 보행자 보호, 화재 예방, - 내 용: 가로 및 골목길 개선, CPTED(방범・방재)	
	D. 휴먼 케어 - 목 적: 주민공동체 및 주민 창업 활성화를 통한 마을 자생능력 제고 - 내 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 내 건축물은 모두 존치되며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

*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 예정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 사업	35,072.5	창영동 21-15번지 일원	제2종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60%이하 (도시계획 조례를 따름)	250%이하 (도시계획 조례를 따름)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를 따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50%이하 (도시계획 조례를 따름)	300%이하 (도시계획 조례를 따름)		

6)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당사항 없음)

7) 도시경관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도시경관	○ 건축물의 형태 · 재료 · 색채 · 담장 등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 ○ 어린이공원, 쉼터, 범죄예방 시설물, 횡단보도 등의 공공시설물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적용 권장 ○ 데크형 담장, 걸이식 화분, 플랜트박스 등 어두운 골목길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적으로 마을경관을 관리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환경보전	○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며, 녹지공간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녹지축 형성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의 저감 방안을 강구
재난방지	○ 반사경,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보안등 설치 등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구역 전체	○ 관계법령에 따름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를 따름 -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을 따름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을 따름

구분		학교명	이격거리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여부(200m 이내)
교육 환경 현황	유치원	송림초교 병설유치원	400m	x
	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10m	O
		영화초등학교	50m	O
		송림초등학교	400m	x
		동명초등학교	480m	x
	중학교	광성중학교	280m	x
	고등학교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10m	O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260m	x
		광성고등학교	280m	x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10)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1)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2) 세입자 주거대책(해당사항 없음)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자연감시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고, 조도부족 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여 조도개선 추진 ○ 골목 시야확보를 위한 반사경설치, 골목길 특화사업 등을 통해 보행을 활성화 시켜 자연감시 가능성 확보
영역성 강화	○ 골목길 특화사업 추진 시, 쇠뿔마을에 특화된 디자인을 도입해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여 범죄 심리 위축 유도 ○ 보차혼용도로에 보행자 영역성을 강조하여 교통사고 예방
유지관리	○ 설치된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통한 안전사항들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
방범용 CCTV설치	○ 기존 설치 된 CCTV 시야각의 사각지대와 방범유발 지역에 CCTV를 신설하여 감시 효율성 극대화하는 범죄예방환경 조성
커뮤니티 시설조성	○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이 방범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14)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5)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주민 자체적으로 주택 보전·정비·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 등 소유자

1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유형	프로그램	역할
공동체 활동	돌봄교실 운영	○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돌봄교실 마을기업 운영 ○ 주요활동으로는 지역주민의 재능기부 방식으로 마을교사를 채용하여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서활동, 돌봄 등 운영함 ○ 돌봄교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인프라, 인적자원, 학교와의 연계, 지자체 지원, 공동체 문화 등이 조화를 이루어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야 함
	창업초기생을 위한 인큐베이터 제공	○ 인큐베이터에서는 주로 사무실 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고 창업초기에서 보통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저렴한 가격에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면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멘토링, 투자자와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함
마을 관리 위탁	노인 돌봄 서비스	○ 방문건강관리, 방문의료 생활지원, 돌봄지원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과 복지혜택제공을 통해 마을 내 사회적 환경을 개선
	공공시설물 관리	○ 주민쉼터, 주차장, 화단, 조경 등 관리
공동이용 시설 운영	마을기업 사무실운영	○ 마을기업 사무실로서 각 사업구상 및 주민회의, 역량강화 교육등을 진행
	마을 카페 운영	○ 바리스타・제과・제빵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쇠뿔고개마을만의 개성있는 카페를 조성하여 주민간의 결합력 강화 및 수익사업에 중요 역할을 하고자 함.
	다목적실 관리	○ 지역주민 대상 다목적실 공간 대여(모임 등)
중간지원 조직 연계	노인일자리 운영	○ 노인 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연계

※ 세부 프로그램은 사업 실행 시 주민협의체 의사에 따라 결정

17)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 없음)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사항 없음)

19) 환지계획(해당사항 없음)

20)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내용
기존 주민 공동체의 연속성 유지	○ 신축되는 주민커뮤니티센터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모임 장소 및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공동체 회복 도모하고 기존 주민모임을 중심으로 주민소통 거점의 역할을 수행 ○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근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 문화 · 예술 · 복지 프로그램 운영 -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 주민협의체 회의를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모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지속적인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쇠뿔고개마을 SNS운영을 통한 마을 소통 활성화 - 주민협의체가 직접 운영하며 주민협의체 회의내용, 참여안내 등의 내용 게시 - 쇠뿔고개마을 SNS(카페, 밴드 등) 운영을 통해 참여가 힘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 소통 창구 마련 ○ 주민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여 주민소모임을 지원해 마을 내 지속적으로 활동할 주민, 공동체 발굴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제공 - 주민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 가능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 참여 유도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 의제발굴을 통해 도출된 아이템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한 컨설팅 및 역량교육을 통하여 마을 특성과 유사한 선진사례 조사 및 탐방을 통해 앞으로의 마을현안 방안 모색 ○ 역량강화 교육 - 주민역량에 맞추어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 이후 직접 관심분야를 선택하여 주민제안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협의체를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름
자생적 운영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 역량강화를 통해 자생할 수 있는 마을운영관리 조직 육성 ○ 마을관리 공동체 중심의 지역주민 고용 ○ 마을기업 창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활성화 구상 ○ 주민제안 공동체사업 운영(마을일자리)

※ 세부 프로그램은 사업 실행 시 주민협의체 의사에 따라 결정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7)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67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97호

도로구역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광역시도 1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59호선)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329),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4.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 도로구역 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총연장 (Km)
결정	광역 시도	1호선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일원	90,632	오류동 434-427	오류동 864		1.6

○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검단일반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산업단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광역시도 1호선의 도로구역 결정

○ 사업시행 기간: 도로구역 결정일 ~ 2022.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2022. 4.11. ~ 2022. 4.24.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서구청 도시계획과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427번지 ~ 오류동 864번지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9	25~28.5	보조간선도로	2,010	광로3-23	북측행정구역계	일반도로	-	인고98-118호(1998.6.12.)	
변경	대로	3	59	25~28.5	보조간선도로	2,010	광로3-23	북측행정구역계	일반도로	-	인고98-118호(1998.6.12.)	경미한 변경 (선형)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59	대로 3-59	•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및 선형변경	• 분할측량에 따른 토지이동 결과 반영 및 잔여지 편입에 따른 경미한 변경

3. 실시계획인가(변경)

○ **사업시행지 위치(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427도 ~ 864천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59호선)사업
- 명칭: 검단산업단지 ~ 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면적(변경) 및 규모(변경 없음)**

- 사업면적: 당초 98,191㎡ / 변경100,669㎡ (증 2,478㎡)
  [사유: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및 선형변경과 잔여지 추가편입]
- 사업규모: 대3-59호 L=2,010m 중 1,600m, B=28.5m
  대2-115호 L=169m, B=31m

○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2019. 5. 8. ~ 2022.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용지조서 1부. 끝.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98호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90번지 일원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7)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민공동체과(032-880-59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11.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추홀구 한나루로 490번길 일원	-	증)49,182	49,182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9,182	-	49,18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49,182	-	49,182	100.0%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구분	규 모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6	8	60	주안동 733-23	주안동 736-17	일반도로	-	2009.09.17.	
기정	중로	2	13	15	236	주안동 1418-83	주안동 1420-44	일반도로	-	2009.09.17.	
기정	소로	2	-	8	67	주안동 1420-5	주안동 1420-9	일반도로	-	2009.09.17.	
기정	소로	3	-	6	60	주안동 731-9	주안동 731-15	일반도로	-	2009.09.17.	
기정	소로	3	-	3	107	주안동 1418-89	주안동 1418-125	일반도로	-	2009.09.17.	
기정	소로	3	-	6	114	주안동 837-1	주안동 1418-104	일반도로	-	2009.09.17.	
기정	소로	3	-	3	185	주안동 1421-69	주안동 1420-9	일반도로	-	2009.09.17.	
기정	소로	3	-	3	110	주안동 1418-54	주안동 1418-83	일반도로	-	2009.09.17.	
기정	소로	3	-	6	102	주안동 1418-64	주안동 1418-93	일반도로	-	2009.09.17.	
기정	소로	3	-	3	126	주안동 731-9	주안동 733-23	일반도로	-	2009.09.17.	
기정	소로	2	-	8~9	238	주안동 1418-54	주안동 734-4	일반도로	-	2009.09.17.	
기정	소로	2	-	8	71	주안동 1421-25	주안동 1420-83	일반도로	-	2009.09.17.	

나)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사미 어린이공원	미추홀구 주안3동 1418-93	1,652 m²	-	-	1974.11.06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신설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센터	주안동 731-3	731.2	◦커뮤니티공간과 공공기능을 복합하여 지역 커뮤니티 거점 역할 수행 - 지상1층: 주차장, RFID 음식물 처리기, 여성안심 택배함 - 지상2층: 문화예술교실, 사무실, 공동체 거점공간, 어린이 공부방 - 옥상: 공동부엌, 무인로봇카페, 공동텃밭, 옥상천문대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커뮤니티공간 시설은 주민협의체에서 운영

※ 공동이용시설 상세 건축계획, 프로그램은 실시계획에 따름

가) 건축분야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분	사업명	규모	내용	추진시기
A 공공공간 기반구축	A-1. 사미커뮤니티 센터 신축 및 운영	• 1개소	• 커뮤니티센터 신축	2022년
		• 마을전체	•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
		• 마을전체	• 수익 및 공동체 운영사업	〃
	A-2 사미골 경로당 리모델링	• 1개소	• 1층 개방형 화장실 운영	〃
		• 1개소	• 경로당 리모델링	〃

구분	사업명	규모	내용	추진시기

B 마을 특화 골목길 정비 계획	B-1 사미옛길 정원 골목길 특화	• 1개소 40m	• 바닥정비(바닥블럭 재정비)	2022년
		• 1개소 120m	• 조명활용 벽화	〃
		• 1개소 120m	• 담장도색 및 벽면그래픽	〃
		• 1개소 40m	• 하수로 보수	〃
		• 마을전체	• 화단형 벤치 설치	〃
	B-2 어린이 갤러리 정원 골목길 특화	• 1개소 50m	• 참여형 조명갤러리 월	2022년
	B-3 으라차차 소통정원 골목길 특화	• 1개소 110m	• 담장 도색	〃
		• 1개소 110m	• 이끼담장	〃
		• 3개소	• 고보조명	〃
		• 마을전체	• 화단형 벤치	〃
	B-4 안녕정원 골목길 특화	• 1개소 70m	• 희망메세지	〃
		• 1개소 70m	• 담장도색	〃
		• 마을전체	• 화분설치	〃
C 지역 문제 해결형 스마트 마을 환경 개선	C-1 스마트 횡단보도	• 2개소	• 고원식 횡단보도	2022년
		• 2개소	•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
		• 2개소	•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 스마트 LED 바닥 경관등	〃
		• 2개소	• 자동 안내시스템 사인	〃
	C-2 스마트 공유 주차장	• 17개소	• 차량 감지 센서	〃
		• 17개소	• 주차선 도색	〃
		• 17개소	• 안내사인	〃

구분	사업명	규모	내용	추진시기
D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D-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 3개소	• 통합형 CCTV (CCTV + 비상벨)설치	2022년
		• 보안등 2개소 고보조명 4개소 벽부형 조명 1개소 23m	• 조도개선 (보안등, 고보조명, 벽부형 조명)	〃
		• 보행자용 4개소 운전자용 4개소	• 반사경 (안심거울)	〃
		• 10개소	•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 (영역성 확대/미관개선)	〃
		• 1개소	• 여성 안심 택배함	〃
	D-2 쓰레기 문제개선	• 2개소	• RFID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 조성	〃
		• 11개소	• 쓰레기 배출시간, 방법홍보	〃
E 튼튼한 공동체 만들기	E-1 사미마을 공동체 활동	• 마을전체	• 공동체 활동 운영 지원	2021년 ~2022년
	E-2 사미골 마을관리기업	• 마을전체	• 조직 구성 및 운영사업 시행	〃
	E-3 마을로고 및 캐릭터 디자인	• 마을전체	• 마을로고 및 캐릭터 디자인 제작	〃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 내 건축물은 모두 존치(공동이용시설 건설부지 내 1개동 제외)되며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9,182	175	174	1	-	-	경로당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위치	허용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49,182	한나루로 490번길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60%이하 (도시계획 조례를 따름)	250%이하 (도시계획 조례를 따름)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를 따름	

6)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당사항 없음)

7)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도시경관	• 건축물의 재료·색채·담장 등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 • 마을 주요골목 환경정비 및 주민공동체 자율관리를 유도하여 지역 정체성 확보, 특화골목길 정비계획(골목정원 조성) • 어린이 참여를 통한 사미어린이공원 담장 갤러리정원으로 개선 야간 조명을 통한 빛의 정원으로 경관개선 • 마을 중심길, 스마트 보행환경시스템(스마트 횡단보도)를 통한 마을 중심 스마트 마을 경관개선 • 스마트 공유주차장(어플을 활용한 주차공유제) 운영을 통한 불법주차 환경 해소 • 불법광고물방지 시트를 활용한 전신주 경관개선 및 영역성확대
환경보전	• 골목정원 조성과 주민들의 자율관리를 통해 꽃, 식물, 이끼 등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 커뮤니티센터 신축 시 필로티형의 건물로 기존 공영주차장 유지와 열효율 패시브 건축기법을 통한 열효율이 높은 커뮤니티센터 설치
재난방지	• 급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 제설함 설치 등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폐공중선 정비를 통해 단선, 전복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화재사고 방지

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령 및 조례를 따름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 동측에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1개소 위치 •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10)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1)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2) 세입자 주거대책(해당사항 없음)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자연감시	• 통행 시 사각지대에 숨어 있거나 나오는 낯선 이를 확인이 어려워 범죄 위험이 있는 구간에 안심거울, 반사경 등을 설치 • 담장 정비, 휴게공간설치, 골목길 보행 활성화를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 획득
영역성 강화	•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를 부착하여 마을이 관리됨을 보여 안전영역성을 강화 • 마을 초입, 좁은 골목에 지역주민공간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잠재적 범죄자의 심리위축 유도
명료성 강화	• 대상지 내 사각지대에 야간조도가 어두워 주민들이 보행 시 두려움을 느끼는 구간에 CCTV, 비상벨, 고보조명, 보안등, 벽면활용 간접조명을 설치
유지관리 공동체활동 연계	• 사미골마을관리기업(가칭)을 통한 주민 스스로가 관리 체계 형성

14)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5)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미추홀구청장
	주민자체적으로 주택 보전·정비·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 등 소유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름

1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마을 관리 위탁,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 도모

○ 공공프로그램 위탁운영,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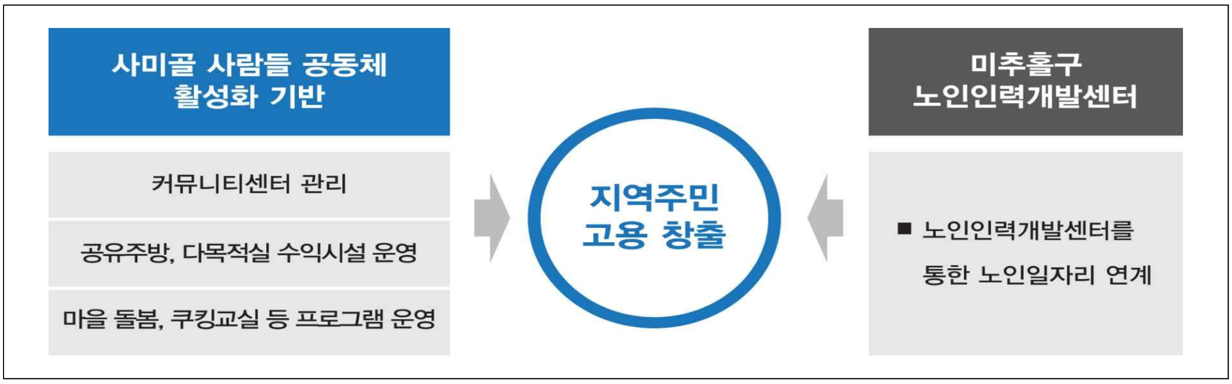

유 형	구 분	역 할
공동체 육성	마을관리단체	마을 자율관리 체계 통합 운영관리(사미골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연계를 통한 마을순환경제 일자리 창출
공공시설물 관리 위탁을 통한 수익창출 방안	마을집수리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화
	어린이 공부방	무인스터디카페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별자리 관측	마을천문대를 활용한 별자리 교육을 통한 수익 창출
	공유식당	공동 주방을 활용하여 카페, 무인카페 및 로스팅 교실 운영으로 수익 창충
중간지원조직 연계	노인일자리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연계 (골목화단관리, 공용주차장 관리, RFID 음식물관리)

※ 세부 프로그램은 사업실행 시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

17)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사항 없음)
19) 환지계획(해당사항 없음)
20)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 분	내 용
기존 주민 공동체의 연속성 유지	◦ 임시거점 역할을 하던 주민협의체 사무실 및 마을주택 관리소의 기능을 대상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전 ◦ 기존 주민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 및 발전시켜 신규주민 유입 유도 : 공동부엌, 마을천문대, 골목정원 가꾸기 등 ◦ 투명한 절차에 따른 주민협의체 조직구성 및 운영으로 마을공동체로서 대표성 부여 ◦ 주민협의체 운영회의,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주민협의체 운영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 마을 소식지 배포, 주민 운영회의 개최로 마을 내 소식 전달 ◦ 주민협의체 회의내용, 참여안내 등의 내용 게시 ◦ 마을SNS 운영을 통해 참여가 힘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창구 마련 ◦ 주민소모임(골목가꾸기, 쿠킹클래스, 돌봄교실 등) 지원을 통해 마을 내 지속적으로 활동할 주민, 공동체 발굴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 의제발굴-계획수립-운영관리프로그램 구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워크숍 ◦ 소모임 운영과 마을축제를 기획·진행하면서 능동적 활동역량 강화 ◦ 유사한 선진사례지 탐방 등을 통해 마을의 미래 계획 ◦ 주민 리더자 역량강화 교육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공동체 소득 창출 방안 마련	◦ 역량강화를 통해 사미골 주민협의체가 자생할 수 있는 마을운영관리 능력 배양 ◦ 마을관리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로 공동체 지속성 확보 ◦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위탁 등을 통한 지역주민 고용 창출

※ 세부 프로그램은 사업실행 시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7)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민공동체과(☎032-880-599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00호

양갑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이 시행하는 양갑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 04. 11.

인천광역시장

1. 사 업 명 : 양갑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양갑리, 대룡리 일원
3. 사업목적 :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 방지 및 재해 사전예방
4. 수혜면적 : 수혜면적 94.82ha(유역면적 404.82ha)
5. 사업내용
   - 배 수 문: 3개소 전동화・보수보강, 차수그라우팅1식
   - 배 수 로: 8조 5.94km(확장・정비)
   - 매 립: 2.01ha(3,020㎥)
6. 사 업 비 : 7,390백만원 (ha당 77,937천원)
7. 사업기간 : 2022. 04. ~ 2024. 12.
8. 사업효과
   - B/C(편익비용비율) : 1.09(4.5%할인시), IRR(내부투자수익률) : 5.2%
   - 침수피해 방지효과, 재해예방효과, 인접지역 농산물 증산 효과 등
9.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 해당없음

10.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11. 기타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032-930-25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열람기간: 사업기간 내)

※ 도면게재 생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01호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 2006.08.01.)에 포함되어,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97호(2010.07.0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의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변경 전 : 송현1,2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변경 후 :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송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동구 송현동 1번지 일원	50,627	
변 경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	50,627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변경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	50,627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 변경

3. 정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송현1,2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	50,627	

2)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0,627	-	50,62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50,627	-	50,627	100.0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108	인천역~광3-9	일반 미관지구	광3-2	51,750	930 2,520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폐지	109	송현아파트주변	일반 미관지구	광2-4	3,900	260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108	인천역~광3-9	○ 미관지구(108) 폐지 면적: 51,750㎡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 (2018.12.31.)호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사항을 반영함
폐지	109	송현아파트주변	○ 미관지구(109) 폐지 면적: 3,900㎡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 (2018.12.31.)호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사항을 반영함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계	50,627	-	50,62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50,627	-	50,627	1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일반미관지구	7,954	감) 7,954	-	-	
택지(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	계	50,627	-	50,627	100.0	
	【주택용지】	37,151	감) 639	36,512	72.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13,476	증) 639	14,115	27.9	-
	도 로	1,348	증) 249	1,597	3.2	조성후 무상귀속
	주차장	308	감) 308	-	-	주차장 폐지
	공 원	8,344	증) 162	8,506	16.8	조성후 무상귀속
	완충녹지	2,300	증) 536	2,836	5.6	조성후 무상귀속
	공공청사	1,176	-	1,176	2.3	부지확보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4	50 ~55.5	주간선 도로	1,400 (324)	광로 3-2	동구북측 구역계	일반 도로	-	86.09.29	일부 구간 완화 차로
변경	광로	2	4	50 (50~57)	주간선 도로	11,983 (324)	광로 3-2	금곡동 구역계	일반 도로	-	-	일부 구간 폭원 변경
기정	광로	3	2	40 ~49.5	주간선 도로	3,380 (324)	광로 3-4	광로 3-9	일반 도로	-	-	일부 구간 완화 차로
변경	광로	3	2	40 (40~53.5)	주간선 도로	6,750 (324)	광로 3-4	광로 3-9	일반 도로	-	-	일부 구간 폭원 변경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는 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2-4	광로 2-4	○ 폭원 변경(전체) - B=50~55.5m→50~57m ○ 폭원 변경(구역내 324m구간) - B=52.5~55.5m→50~53m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66호 (2020.7.1.)에 따른 변경사항 및 일부 국공유지의 미개설 구간을 반영하여 도로폭 조정
광로 3-2	광로 3-2	○ 폭원 변경(전체) - B=40~49.5m→40~53.5m ○ 폭원 변경(구역내 324m구간) - B=40~49.5m→43~53.5m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64호 (2019.7.22.)에 따른 변경사항 및 현황측량을 반영하여 기 개설된 보도를 기준으로 도로폭 조정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노외 주차장	동구 송현동 1-9번지 일원	308	감) 308	-	인고제2010-197호 (2010.7.5.)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폐지 - A=308㎡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13.5.27. 개정) 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사항 삭제에 따른 주차장 폐지

다) 도시계획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 녹지	동구 송현동 1-766번지 일원	2,300	증) 536	2,836	인고제2010-197호 (2010.7.5.)	조성후 무상귀속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완충녹지	○ 면적 증가 - A=2,300㎡→2,836㎡ 증) 536 ○ 폭원 변경 - B=7~10m→10~11.841m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로변 완충녹지 확장

라) 도시계획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송현동 1-173번지 일원	8,344	감) 233	8,111	인고제1994-41호 (1994.3.26.)	미조성 부지 실효
변경	-	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송현동 1-173번지 일원	8,111	증) 395	8,506	인고제1994-41호 (1994.3.26.)	조성후 무상 귀속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어린이공원	○ 면적 감소 - A=8,344㎡→8,111㎡ 감) 23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미조성된 공원 부지 실효
-	어린이공원	○ 면적 증가 - A=8,111㎡→8,506㎡ 증) 395	○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적 확보를 위해 공원 확장

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공 청사	주민 자치 센터	동구 송현동 1-9번지	1,176	-	1,176	인고제2010-197호 (2010.7.5.)	부지 확보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 부지형상 변경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공공청사 부지형상 변경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6)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송현1,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0,627	-	-	송현동 1-9번지 일대	28	-	-	28	-	-
변경	송현1,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50,627	-	-	송현동 1-9번지 일대	29	-	-	29	-	-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송현 1,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0,627	획지1	37,151	송현동1-9 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이하	240이하 (250이하)	65m 이하	-
			획지2	308	송현동1-9 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60이하	250이하	20m 이하	-
			획지3	1,176	송현동1-9 번지	공공청사	60이하	250이하	20m 이하	주민자치센터

구분	획지	용도 구분	내용
건축물 용도	획지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3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또는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로경계로부터 6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 부지제공 34.42% + 공공이용시설확보 3.22% + 탑상형아파트 5% = 252.64% -계획 용적률 : 249.81%(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40%미만	20%~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어린이공원과 완충녹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변경

결정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송현 1,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50,627	획지1	36,512	송현동1-9 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이하	250이하	90m 이하	-
			획지2	1,176	송현동1-9 번지	공공청사	60이하	250이하	20m 이하	주민 자치센터

구분	획지	용도 구분	내용
건축물 용도	획지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또는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로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기반시설부지 확보 3.28% + 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한 부지제공 40.35% = 253.63% -계획 용적률 : 250% 이하		

※ 어린이공원과 완충녹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8)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h>비 고</th></tr>
<tr><td>환경
보전
계획</td><td colspan="2">○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td><td></td></tr>
<tr><td rowspan="3">재난
방지
계획</td><td>화재</td><td>○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td><td rowspan="3"></td></tr>
<tr><td>수해</td><td>○ 자연토양유지 및 보행통로,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td></tr>
<tr><td>교통</td><td>○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td></tr>
</table>

○ 변경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h>비 고</th></tr>
<tr><td>도시
경관
계획</td><td colspan="2">○ 건축물의 색채, 스카이라인 등의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환경 제고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상형 식수 및 녹음식수를 적절히 배치
○ 단지 내 독창적인 휴게시설 및 광장을 조성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단지 이미지 제고
○ 특징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및 색채계획</td><td></td></tr>
<tr><td>환경
보전
계획</td><td colspan="2">○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td><td></td></tr>
<tr><td rowspan="3">재난
방지
계획</td><td>화재</td><td>○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td><td rowspan="3"></td></tr>
<tr><td>수해</td><td>○ 자연토양유지 및 보행통로,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td></tr>
<tr><td>교통</td><td>○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td></tr>
</table>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사업 시행 시	대기질, 소음, 진동대책	○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 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 공사는 가급적 방과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
	보행 안전대책	○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 ○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 (07:00~09:00, 17:00~19:00) ○ 사업지 주변에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사업완료시		○ 사업지구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확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향후 사업시행인가 협의 시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 계획에 맞춰 제반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분담

1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고
-	-	50,627	①	송현동1-9번지 일원	37,151	공동주택용지
			②	송현동1-9번지 일원	308	주차장
			③	송현동1-9번지	1,176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④	송현동1-766번지 일원	2,300	완충녹지
			⑤	송현동 1-173번지 일원	8,344	공원
			도로	-	1,348	

※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고
-	-	50,627	①	송현동1-9번지 일원	36,512	공동주택용지
			②	송현동1-9번지	1,176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③	송현동1-766번지 일원	2,836	완충녹지
			④	송현동 1-173번지 일원	8,506	공원
			도로	-	1,597	

※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

11)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 시행방법(변경)

- 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시행예정시기(변경)

- 기정 : 구역지정후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 변경 :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12)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도로경계로부터 6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음

○ 변경

- 도로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음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 “8) 도시경관ㆍ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 역 명	정비사업 유 형	구역면적 (㎡)	주택수 현 황	구역지정	사업예정시기	비고
계	4개 구역	338,737.7	3,096	-	-	-
송현1,2차 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50,627	943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송림1,2동 구역	주택재개발	156,856	1,102	인고2009-266호 2009.08.24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	92,000	682	인고2009-127호 2009.04.20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송림현대 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	39,254.7	333	인고2009-262호 2009.08.24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주택수급현황

구 분	세대수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비고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933,686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8,707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9,474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58,876	141,955	82,570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9,463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35,174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200,093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17,132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32,688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5,278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6,801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 변경

■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900	394	506	1,073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개발 방식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계획 세대수	진행현황	비고
송림3구역	재개발	54,920.7	20이하	310이하	90m이하	1,321	관리처분인가	
금송구역	재개발	162,623.3	18이하	300이하	135m이하	3,965	관리처분인가	
서림구역	재개발	19,477.1	22이하	225이하	45m이하	372	사업시행인가	
송림1,2동 구역	재개발	153,784.9	제3종:30 상 업:50	제3종:299 상 업:424	150m이하	3,693	사업시행인가	
대헌학교뒤	주거 환경 개선	63,010.2	50이하	285이하	110m이하	2,118	준공	
송림4구역							사업시행인가	
송림6구역	재개발	10,146.1	40이하	560이하	110m이하	378	관리처분인가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방향	○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 시 현황 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	
기존 수목 현황 및 활용 계획	○ 사업대상지는 주택지내 수목 및 도로변 수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목 형태를 보이지 않음 ○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 식재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친화적 휴식공간조성	
나무은행 운영계획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1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대상지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위치	계획내용	계 획 내 용	비고
획지1	차량출입 불허구간	○ 광로 2-4호선변 차량출입 불허	
	차량출입 허용구간	○ 광로 3-2호선변 차량출입 일부허용 ○ 북측 15m 도로변 일부구간 차량출입 허용	

나)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변경)

○ 기정

- 용적률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정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

○ 변경

- 용적률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정법 제9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

18)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 건축과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작전동 286-2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2-44호(2022.3.25.)]과 병행고시 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 032-440-170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4.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명: 작전동 286-2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2.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86-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 조서: 게재 생략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2-44호(2022. 3.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중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40호선) 결정(변경) 승인 내용과 같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25호

2022년「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계획 공고

인천만의 특색이 담긴 오래된 가게를 발굴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2022년「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 월 11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선정대상 :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위중인 소상공인**

-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지역내** 30년이상 오래된 가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별지2> 참조)

○ **선정규모** : 10개소 4개 권역 구분 순차적 추진(매년 10개소)

* ('20년) 중 · 동구, ('21년) 부평 · 계양, ('22년) 미추홀 · 연수 · 남동, ('23년) 서구 · 강화 · 옹진

○ **사 업 비** : 114,600천원 〔시비 100%〕

○ **지원내용** : 환경개선비지원,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제작 등

○ **홍보지원** : 인증현판 제공, 굿모닝인천 및 SNS 온라인 홍보 등

○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 가게당 최대 5백만원

- 전통적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 정비하는 범위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4. 18.(월) ~ 5. 13.(금)**

* 이어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28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구월동) 14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 관련증빙서류 일체 등**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	1부	<붙임1> 작성
2	신청업체 기술서 / 추천서	1부	<붙임1-1> 작성
3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1부	<붙임1-2> 작성
4	증빙자료	해당부수	<붙임1-3> 작성
5	사업자등록증	1부	<붙임1-4> 작성
6	가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부수	<붙임1-5> 작성

3. 선정절차

○ 3단계로 추진 (①신청 ⇢ ②현장확인 ⇢ ③선정위원회)

- (1단계) 신청*사항에 대한 서류심사로 적정여부 검토

  * 공모를 통한 신청과 군구 추천 병행

- (2단계) 현장확인
- (3단계)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모집공고 / 신청(추천) → **서류검증** → **현장평가** → **심사** → **선정발표**

※ 현장평가 일시는 신청업체에 개별 안내 예정

4. 이어가게 선정 평가지표

○ ①역사성 ②희소성 ③지역성 ④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기 준	평가지표	비고
역사성	업력, 동일 재화(메뉴) 및 체험서비스 제공 대물림되거나 창업자 경영 유지	30%
희소성	기술적 희소성, 업종의 희소성, 보존가치성	25%
지역성	지역특성 (지리적·산업적 특성 등) 지역 정서 함유	20%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경영철학, 매출액 및 고용증감, 발전가능성	25%
가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 봉사활동, 자격증/ 특허 보유, 인증 실적 등	6점

5.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가게를 상속을 받아 운영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증여세신고서, 가업승계 계약서 등) 가업승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 시 인정

○ 업력은 동일업종의 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관련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첨부)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일체반환 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6.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8)

붙임 1. 신청서
1-1. 신청업체 (기술서/추천서)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3. 증빙자료
1-4. 사업자등록증 등
1-5.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2.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3. 평가지표 및 내용

<붙임 1> 신청서

업력 30년 이상 “이어가게” 신청서(추천서)

접수번호	

* 모든사항 필수 기재

신청인 정보	업 체 명		최초창업일	*0000년 0월 0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업 종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기재*
	업 체 주 소	*ex)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로 000 1층*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연락처	(H.P) (TEL)	e-mail	@
	매출실적	(2019년) ______백만원 → (2020년) _____백만원 → (2021년) _____백만원		
	고용증감	(2019년) ______명 → (2020년) ______명 → (2021년) _____백만원		

신청년도 업체현황	업력	상시근로자수	주요사업	업종
	00년	*0* 명		

※ 이어가게 발굴 및 육성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

①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 : 예 □ 아니오 □

② 현장평가(조직관리, 재무성과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답할 것 : 예 □ 아니오 □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2022년 이어가게 사업』 참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바, 이에 신청(추천)합니다.

2022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 본 신청서는 <2022년「인천 이어가게」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 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되며,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 선정 이후 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1-1) 신청업체 기술서/ 추천서 1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1-3) 증빙서류(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5)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1부.

<붙임 1-1> 신청업체 기술서 / 추천서 (선택)

신청업체 (기술서 / 추천서)

가게에 대한 기술사항 / 추천이유	○ 사업 경력 - 전체 사업경력 ____년 가운데 현 소재지에서 ___년 운영 ○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요소 (※ 역사성, 전문성, 창조성, 예술성, 상징성 등 해당 가게만의 추억을 중심으로) - - ※ 점포 및 대표자에 대한 소개 및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경영방식 및 향후계획 등을 서술

<붙임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이어가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인천시가 본인의 가게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인천시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가게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또는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가게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이어가게 사업의 인천시 사업추진 관련하여 인천시 지원사업 안내, 사업홍보관련 SMS 등 의 업무수행

■ 가게 정보의 수집항목

가게정보 : 점포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판매품목,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소재지, 가게 현황(가게구분, 개업연도, 운영기간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가게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오래된 가게 사업 및 연관 업무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어 가게 업무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업무 외 사업 홍보 SMS 발송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 가게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인천광역시, 해당 지원사업 소관기관(집행기관 포함)

■ 제공받는자의 가게정보 이용 목적

인천광역시의 이어가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가게의 지원정보의 수집.조회 활용

■ 제공하는 개인 및 기업정보 항목

가게정보 : 점포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판매품목,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소재지, 가게 현황(가게구분, 개업연도, 운영기간 등)

■ 제공받는 자의 가게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인천광역시의 이어가게 사업 지원정책 소멸 또는 폐기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가게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가게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어 가게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u>본인은 가게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동의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u>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1-3> 증빙자료

※ 소상공인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①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시스템 발급)

② 매출액 확인서류(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보유	표준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 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표준재무제표증명 미보유	※ 아래 서류 중 1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복합 업종의 경우 주된 사업(업태) 판단을 위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3년)해야 하며, 해당서류는 매출증빙이 될 수 없음 ② 사업장현황 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이니 확인)

③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사업연도 3년)

* 상시근로자는 임원 및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단기근로자) 등을 제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①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년말(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①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

<붙임 1-4>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본 첨부

<붙임 1-5> 가산점관련 증빙서류

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봉사활동 증빙서류

- 나눔·봉사활동 확인서

② 업종관련 자격증 및 특허 보유 입증서류

③ 인증 실적

- 부처 및 구에서 공식 운영 중인 지정제도 지정시 증빙서류

* 각 2점, 최대 4점을 넘을 수 없음

예시) 백년가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기타 지자체별 운영 지정제도

<붙임2> 신청 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3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산업분류	업 종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3> 이어가게 평가지표 및 내용

구분	평 가 내 용	평가 점수
역사성 (30)	1) **업력(동일업종)** ① 40년 미만(6점) ② 50년 미만(7점) ③ 60년 미만(8점) ④ 70년 미만(9점) ⑤ 70년이상 (10점)	
	2) **지속적으로 동일 재화(메뉴)와 체험서비스 제공** ① 매우낮음(6점) ② 낮음(7점) ③ 보통(8점) ④ 높음(8점) ⑤ 매우높음 (10점)	
	3) **개업이후 대물림되거나 개업당시 주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 ① 창업자(7점) ② 2대 운영(8점) ③ 3대 운영(9점) ④ 4대 이상(10점)	
희소성 (25)	4) **현 시대의 보기 힘든 기술방식 사업을 고수하고 있는 곳** ① 매우낮음(4점) ② 낮음(5점) ③ 보통(6점) ④ 높음(7점) ⑤ 매우높음 (8점)	
	5) **사양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곳** ① 매우낮음(4점) ② 낮음(5점) ③ 보통(6점) ④ 높음(7점) ⑤ 매우높음 (8점)	
	6) **보존가치성** ① 매우낮음(5점) ② 낮음(6점) ③ 보통(7점) ④ 높음(8점) ⑤ 매우높음 (9점)	
지역성 (20)	7) **인천과 관련 있는 지역 특성 부합(지리적 특성, 지역산업, 지역특산물 등)** ① 매우낮음(6점) ② 낮음(7점) ③ 보통(8점) ④ 높음(9점) ⑤ 매우높음 (10점)	
	8) **인천의 옛 정서 등이 묻어 있고 시민생활에 영향이 미치는 곳 (피나민 시절 등)** ① 매우낮음(6점) ② 낮음(7점) ③ 보통(8점) ④ 높음(9점) ⑤ 매우높음 (10점)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25)	9) **가게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지 할 수 있는 경영철학** ① 매우낮음(4점) ② 낮음(5점) ③ 보통(6점) ④ 높음(7점) ⑤ 매우높음 (8점)	
	10) 매출액 증가율(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① 40%미만(2점) ② 40%이상(3점) ③ 45%이상(4점) ④50%이상(5점)	
	11) 일자리 창출(고용의 증감) ① 고용감소(1점) ② 고용유지(3점) ③ 고용증가(5점)	
	12) **시대의 변화속에서 발전가능성(트랜드 발전 등)이 있는 곳** ① 낮음(4점) ② 보통(5점) ③ 높음(6점 ④ 매우높음 (7점)	
총 점		

가산점 (6)	1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 봉사활동** ① 없음(0점) ② 있음(1점)	
	14) 자격증/ 특허 **보유** ① 없음(0점) ② 자격증 또는 특허 보유(1점)	
	15) 인증 실적(부처 및 지자체에서 공식 운영 중인 지정제도 지정여부) * 각 2점, 최대 4점을 넘을 수 없음 ① 백년가게 (유, 무) ② 위생등급제(유,무) ③ 기타 지자체별 운영 지정제도(유,무)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6호선, 중로1-688호선)
사업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6호선, 중로1-688호선 / 사업명: 광로2-6호선 외 1개 노선 도로확장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류를 공고·열람합니다.

2022. 4.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4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6호선, 중로1-688호선)사업

○ 명칭: 광로2-6호선 외 1개노선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당초	- 면적: 4,080.6㎡ - 광로2-6호선 : 연장(L)=156m, 폭(B)50→53m(3m 확장) - 중로1-688호선: 연장(L)=157m, 폭(B)10→23m(13m 확장)
변경	- 면적: 4,079.2㎡ - 광로2-6호선 : 연장(L)=156m, 폭(B)50→53m(3m 확장) - 중로1-688호선: 연장(L)=157m, 폭(B)10→23m(13m 확장)

4.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당초	- 성명: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무주골파크(주) 대표자 하헌우, 김상훈
	- 주소: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6, 10층(역삼동, 태왕빌딩)
변경	- 성명: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무주골파크(주) 대표자 노복영
	- 주소: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 비동 12층 1216호(마곡동, 문영 퀀즈파크11차)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21. 1. 4. ~ 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과 같음.

7.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 기간: 2022. 4.11. ~ 2022. 4.25.

○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6),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52)

붙임: 토지조서 1부. 끝.

토 지 조 서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용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1	기정	선학동	144-2	도	274.7	274.7	인천광역시 연수구	-	
	변경	선학동	144-2	도	274.7	274.7	인천광역시 연수구	-	
2	기정	선학동	144-6	구	13	13	인천광역시	-	
	변경	선학동	144-6	구	13	13	인천광역시	-	
3	기정	선학동	149-1	전	10,072	1,677	인천광역시	-	
	변경	선학동	149-6	전	1,677.5	1,677.5	인천광역시	-	
4	기정	선학동	149-4	구	36	36	인천광역시	-	
	변경	선학동	149-4	구	36	36	인천광역시	-	
5	기정	선학동	150-10	구	99	99	인천광역시	-	
	변경	선학동	150-10	구	99	99	인천광역시	-	
6	기정	선학동	150-13	구	50	50	최**	남구 주안동1600 신비마을A*동*호	
	변경	선학동	150-13	구	50	50	인천광역시	-	
7	기정	선학동	205-5	도	295.6	10.3	인천광역시	-	
	변경	선학동	205-10	도	9.9	9.9	인천광역시	-	
8	기정	선학동	205-6	구	64	64	인천광역시	-	
	변경	선학동	205-6	구	64	64	인천광역시	-	
9	기정	선학동	205-7	구	19	19	인천광역시	-	
	변경	선학동	205-7	구	19	19	인천광역시	-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용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10	기정	선학동	205-8	구	4	4	인천광역시	-	
	변경	선학동	205-8	구	4	4	인천광역시	-	
11	기정	선학동	205-9	구	138	138	인천광역시 연수구	-	
	변경	선학동	205-9	구	138	138	인천광역시 연수구	-	
12	기정	선학동	207-2	전	1,088	77	인천광역시	-	
	변경	선학동	207-5	전	77	77	인천광역시	-	
13	기정	선학동	210	전	6,342.1	6	인천광역시	-	
	변경	선학동	210-5	전	5.9	5.9	인천광역시	-	
14	기정	선학동	210-4	전	12,944	78	인천광역시	-	
	변경	선학동	210-6	전	78	78	인천광역시	-	
15	기정	선학동	328-51	도	1.6	1.6	국(국토교통부)	-	
	변경	선학동	328-51	도	1.6	1.6	국(국토교통부)	-	
16	기정	선학동	329-6	천	2,254.6	1,506	국(국토교통부)	-	
	변경	선학동	329-6	천	1,162.5	1,162.5	국(국토교통부)	-	
		선학동	329-16	천	52.7	52.7	국(국토교통부)	-	
		선학동	329-18	천	262.5	262.5	국(국토교통부)	-	
		선학동	329-19	천	6.6	6.6	국(국토교통부)	-	
		선학동	329-20	천	20.3	20.3	국(국토교통부)	-	
17	기정	선학동	329-7	천	445	27	국(국토교통부)	-	
	변경	선학동	329-15	천	27	27	국(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974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이용식 원장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소 속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직 위	원장	성 명	이용식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동국알앤에스	2,000	매각	9,050	2022.3.16.	대신증권
배우자	심텍	365	매각	18,615	2022.3.18.	대신증권
배우자	lg에너지솔루션	1	매각	400	2022.3.28.	대신증권
배우자	한양이엔지	72	매각	113	2022.3.29.	대신증권
배우자	심텍홀딩스	230	매각	1,405	2022.3.29.	대신증권
배우자	동국산업	342	매각	1,183	2022.3.31.	대신증권
배우자	신화인터텍	65	매각	188	2022.3.31.	대신증권
배우자	신화인터텍	5	매각	14	2022.3.31.	대신증권
배우자	동국알앤에스	1,000	매각	4,400	2022.3.31.	대신증권
배우자	동국알앤에스	1,000	매각	4,500	2022.3.31.	대신증권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82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공청회 개최 공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2. 4. 26.(화) 14:00～15.30

나. 장소: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다. 온라인 참여: 인천광역시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icncityhall)

3.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개요

가. 계획의 범위

- 반환공여구역: 부평구 산곡동 일원(캠프마켓 0.44㎢)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부평구 산곡1~4동, 부평1,3동 일원(6.69㎢)
- 공여구역 주변지역: 강화군 하점면 일원(36.16㎢)

나. 주요내용

- 사업기간(변경): 2009~2022년 → 2009년~2026년(4년 연장)
- 사업비(변경): 지가 상승분 반영 등
- 토지이용계획(변경): 공공시설(광장 등 5개) 및 도로(2개 노선) 폐지, 공원면적 증가 등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은 사전 신청자 50명으로 제한하니 양해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2. 4. 11.(월) ~ 2022. 4. 20.(수)

2)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인천광역시청 캠프마켓과,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팩스(032-440-8703), 전자우편(imjmh@korea.kr) 모두 가능
(제출서식: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위해 동일 지역, 업종, 단체 등의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공청회 개최 전날까지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며, 선정되지 않은 분에게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의견서 제출

1) 제출기한: 2022. 4. 26.(화) ~ 2022. 5. 3.(화) 18시까지

2) 제출방법

- 온라인(인천광역시 유튜브 방송 중 의견란 작성)
- 우편 또는 방문(인천광역시청 캠프마켓과,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팩스(032-440-8703), 전자우편(imjmh@korea.kr) 모두 가능
(제출서식: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본 공청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참석을 제한하며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합니다.(본 공고 이후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참석 인원의 제한 또는 온라인 생중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캠프마켓과(☏032-440-46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84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공고(안)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을 처리하고, 같은 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리일자: 2022. 4. 6.
2.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인천광역시 관할 개발제한구역 67.54㎢
   ❍ 주요 내용

구 분	시설명	사업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육군 제7851부대	국방부장관	남동구 장수동 1번지 일원	당초: 1,082,842 (변경없음)	당초: 64,305.91 변경: 64,833.41 증감: 증527.5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4.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85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공고(안)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을 처리하고, 같은 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리일자: 2022. 4. 6.
2.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 ❍ 계획의 범위 : 인천광역시 관할 개발제한구역 67.54㎢
   - ❍ 주요 내용

구 분	시설명	사업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국방.군사시설	육군 제3623부대	국방부장관	계양구 귤현동344-1번지 일원	당초 : 194,619 변경 : 203,962 증감 : 증9,343	당초 : 7,150.05 변경 : 없음 증감 : 없음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양구청 도시재생과
4.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8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 4. 7.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변경 사항

구분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당초	제2000-0- 인천광역시-15호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미추홀구지회	나근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304, 2층(숭의동)	
변경	상동	상동	김건영	상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8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 4. 7.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변경 사항

구분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당초	제2000-0- 인천광역시-28호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부평구지회	유제홍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72번길 5, 2층	
변경	상동	상동	이문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351, 2층 (갈산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9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원적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원적산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안) 총괄 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15,172	49,950	6	398.4	426.6	34	215,172	49,399	6	398.4	426.6	37	
공원시설	시 설 계		49,950	49,950	-	-	-	-	49,399	49,399	-	-	-	-	감) 551㎡
	기반시설	소계	18,989	18,989	-	-	-	-	20,058	20,058	-	-	-	-	증) 1,069㎡
		도로	14,943	14,943	-	-	-	-	14,879	14,879	-	-	-	-	감) 64㎡
		광장	4,046	4,046	-	-	-	-	5,179	5,179	-	-	-	-	증) 1,133㎡
	조경시설		-	-	-	-	-	-	-	-	-	-	-	-	
	휴양시설		10,330.5	10,330.5	-	-	-	15	8,787.5	8,878.5	-	-	-	18	감) 1,543㎡
	유희시설		767	767	-	-	-	9	767	767	-	-	-	9	
	운동시설		12,324	12,324	-	-	-	10	12,247	12,247	-	-	-	10	감) 77㎡
	교양시설		2,185	2,185	1	30	30	-	2,185	2,185	1	30	30	-	
	편익시설		4,749.5	4,749.5	4	192.58	230.08	-	4,749.5	4,749.5	4	192.58	230.08	-	
	관리시설		605	605	2	175.82	166.52	-	605	605	2	175.82	166.52	-	
녹지 및 기타			165,222	-	-	-	-	-	165,773	-	-	-	-	-	녹지율: 76.79%
시설율(%) (법정 40%이하)			(49,950㎡ ÷ 215,172㎡) × 100 = 23.21%						(49,399㎡ ÷ 215,172㎡) × 100 = 22.96%						
건폐율(%) (법정 15%이하)			(398.4㎡ ÷ 215,172㎡) × 100 = 0.19%						(398.4㎡ ÷ 215,172㎡) × 100 = 0.19%						

2.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입안사유

○ 이용도가 떨어지는 인라인장을 광장으로 변경, 공원이용자의 의견에 따라 기존 야유회장 일부 지역에 풋살장을 조성 및 기존 배드민턴장(사-1)을 인접한 족구장에 편입하여 족구장을 확장하여 조성하고자 함

3.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조성계획도 : 붙임 참조

(관계도면 게재 생략 :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032-440-5876)

○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032-509-868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93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번길(원창동 10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명칭: SK인천정유소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면 적: 1,040,346.6㎡ → 1,038,932.6㎡(감1,414.0㎡)

○ 규 모

- 건축연면적: 84,266.053㎡ → 84,665.653㎡(증399.600㎡)
- 공작물면적: 164,131.946㎡ → 164,308.152㎡(증176.20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00번지
- ○ 성명: SK인천석유화학(주) 대표이사 최윤석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 사업기간: 2007. 12. ~ 2024.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 따로 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아.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 열람기간: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 ○ 의견제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열람장소
-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22,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민원동 3층)
-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본관4층)

차. 관계서류: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될 토지의 세목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1	원창동	94	잡	288.0	-	288.0	288.0	-	288.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2	원창동	95-4	대	41,570.0	-	41,570.0	41,570.0	-	41,570.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3	원창동	97-1	잡	7,884.0	-	7,884.0	7,884.0	-	7,884.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4	원창동	97-3	도	12,162.0	-	12,162.0	12,162.0	-	12,16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5	원창동	97-4	잡	2,261.0	-	2,261.0	2,261.0	-	2,261.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6	원창동	97-6	대	144,364.0	-	144,364.0	144,364.0	-	144,364.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7	원창동	97-7	잡	1,755.0	-	1,755.0	1,755.0	-	1,755.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8	원창동	97-8	도	2,271.0	-	2,271.0	2,271.0	-	2,271.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9	원창동	97-10	잡	28,407.0	-	28,407.0	28,407.0	-	28,407.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10	원창동	97-12	잡	347.0	-	347.0	347.0	-	347.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11	원창동	97-15	잡	92,912.0	-	92,912.0	92,912.0	-	92,91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12	원창동	97-16	잡	46.0	-	46.0	46.0	-	4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13	원창동	97-17	잡	112.0	-	112.0	112.0	-	11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14	원창동	97-27	임	567.0	-	567.0	567.0	-	567.0	(국)재정경제부	
15	원창동	97-28	장	486.0	-	486.0	486.0	-	48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16	원창동	100	대	159,846.0	-	159,846.0	159,846.0	-	159,84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17	원창동	100-1	잡	69.0	-	69.0	69.0	-	69.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18	원창동	127	장	2,136.0	-	2,136.0	2,136.0	-	2,13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19	원창동	128-2	답	162.0	-	162.0	162.0	-	16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20	원창동	128-4	답	260.0	-	260.0	260.0	-	260.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21	원창동	128-5	장	1,912.0	-	1,912.0	1,912.0	-	1,91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22	원창동	128-6	장	1,264.0	-	1,264.0	1,264.0	-	1,264.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23	원창동	128-7	답	3.0	-	3.0	3.0	-	3.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24	원창동	128-8	장	536.0	-	536.0	536.0	-	53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25	원창동	128-9	장	602.0	-	602.0	602.0	-	60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26	원창동	129-1	전	86.0	-	86.0	86.0	-	8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27	원창동	129-2	전	430.0	-	430.0	430.0	-	430.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28	원창동	129-5	전	354.0	-	354.0	354.0	-	354.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29	원창동	129-8	장	1,145.0	-	1,145.0	1,145.0	-	1,145.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30	원창동	175-4	장	3,812.0	-	3,812.0	1,633.3	-	1,633.3	(국)기획재정부	
31	원창동	191	잡	6,502.0	-	6,502.0	6,502.0	-	6,50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32	원창동	196	장	1,458.0	-	1,458.0	1,458.0	-	1,458.0	(국)기획재정부	
33	원창동	196-20	잡	4,716.0	-	4,716.0	4,716.0	-	4,716.0	(국)재무부	
34	원창동	382-13	잡	283.4	-	283.4	283.4	-	283.4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35	원창동	382-16	잡	9,120.6	-	9,120.6	9,120.6	-	9,120.6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36	원창동	382-111	구	266.7	-	266.7	266.7	-	266.7	인천광역시 서구청	
37	원창동	산54-7	임	18,096.0	-	18,096.0	18,096.0	-	18,09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38	원창동	산54-8	임	35,088.0	-	35,088.0	35,088.0	-	35,088.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39	원창동	산78-4	임	102,159.0	-	102,159.0	102,159.0	-	102,159.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40	원창동	산80-2	임	893.0	-	893.0	893.0	-	893.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41	원창동	산84	임	20,628.0	-	20,628.0	20,628.0	-	20,628.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42	원창동	산86	임	1,190.0	-	1,190.0	1,190.0	-	1,190.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43	원창동	산87-6	임	1,488.0	-	1,488.0	1,488.0	-	1,488.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44	석남동	204-1	장	6,858.0	-	6,858.0	6,858.0	-	6,858.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45	석남동	204-2	장	2,692.0	-	2,692.0	2,692.0	-	2,69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46	석남동	204-47	장	455.0	-	455.0	455.0	-	455.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47	석남동	204-48	장	65.0	-	65.0	65.0	-	65.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48	석남동	204-49	장	458.0	-	458.0	458.0	-	458.0	(국)재정경제부	
49	석남동	204-50	장	1,591.0	-	1,591.0	1,591.0	-	1,591.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50	석남동	204-51	장	1,215.0	-	1,215.0	1,215.0	-	1,215.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51	석남동	204-52	장	754.0	-	754.0	754.0	-	754.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52	석남동	204-53	장	273.0	-	273.0	273.0	-	273.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53	석남동	204-54	장	150.0	-	150.0	150.0	-	150.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54	석남동	224	잡	81,197.0	-	81,197.0	81,197.0	-	81,197.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55	석남동	224-14	잡	954.0	-	954.0	954.0	-	954.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56	석남동	241-1	잡	380.0	-	380.0	380.0	-	380.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57	석남동	249-2	잡	169.0	-	169.0	169.0	-	169.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58	석남동	257	잡	595.0	-	595.0	595.0	-	595.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59	석남동	257-1	잡	3,018.0	-	3,018.0	3,018.0	-	3,018.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60	석남동	258	잡	803.0	-	803.0	803.0	-	803.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61	석남동	259	잡	18,040.0	-	18,040.0	18,040.0	-	18,040.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62	석남동	산118-1	임	2,634.0	-	2,634.0	2,634.0	-	2,634.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63	석남동	산118-2	도	1,139.0	-	1,139.0	1,139.0	-	1,139.0	인천광역시 서구청	
64	석남동	산118-8	임	1,304.0	-	1,304.0	1,304.0	-	1,304.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65	석남동	산118-9	임	1,414.0	-	-	1,414.0	-	-	인천광역시	구역 제척
66	석남동	산118-12	임	529.0	-	529.0	529.0	-	529.0	인천광역시	
67	석남동	산124-4	임	418.0	-	418.0	418.0	-	418.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68	석남동	산124-7	임	1,040.0	-	1,040.0	1,040.0	-	1,040.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69	석남동	산124-8	임	40.0	-	40.0	40.0	-	40.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70	석남동	산125-1	임	91,626.0	-	91,626.0	91,626.0	-	91,62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71	석남동	산125-2	임	1,968.0	-	1,968.0	1,968.0	-	1,968.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72	석남동	산125-9	임	155.0	-	155.0	155.0	-	155.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73	석남동	산125-10	임	3,320.0	-	3,320.0	3,320.0	-	3,320.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74	석남동	산125-11	임	2,085.0	-	2,085.0	2,085.0	-	2,085.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75	석남동	산139-1	임	101,119.0	-	101,119.0	99,787.6	-	99,787.6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76	석남동	산139-7	임	5,461.0	-	5,461.0	5,461.0	-	5,461.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	
합 계				1,043,856.7	감)1,414.0	1,042,442.7	1,040,346.6	감) 1,414.0	1,038,932.6		

2.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인가된 때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사항임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번길(원창동 100번지) 일원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00번지 일원	1,040,346.6	감) 1,414.0	1,038,932.6	1989. 5. 23.	

○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면적 감소 및 시설경계 변경 - 기정: 1,040,346.6㎡ - 변경: 1,038,932.6㎡(감1,414.0㎡)	• 기 고시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55호(2021. 12. 30.)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이행 - 인천광역시 소유 재산 1필지 제척

라. 관계서류: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등록기준 미달,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년 4 월 11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	법인주소	예정된 행정처분 원인
1	664	㈜와이드원	윤**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706호 (송도동, 송도건원테크노큐브)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0.3.21.)
2	541	다솜로지스틱㈜	신**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6, 에이동 814,815호(신흥동3가,정광씨팰리스)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0.4.21.)
3	569	(주)부성국제로직스	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6, 105동 2401호(용현동, 용현엑슬루타워)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0.8.19.)
4	442	㈜명성해운항공	이**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172(신흥동3가)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0.12.2.) 등록기준미신고(2.14.) (신고기한:2021.4.14.)
5	314	㈜대운글로벌	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108, 908 (운서동, 비투빌)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1.13.)
6	727	주식회사 삼광로지스틱	김**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20, 101호(청라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3.6.)
7	606	우영국제해운㈜	샤**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101동 1408호(연희동, 청라풍림엑슬루타워)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2.13.) 등록기준미신고(2.23.) (신고기한:2020.4.25.)
8	637	㈜국제로지스틱스	송**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	신고일(2020.11.10) 등록기준미신고 (신고기한:2021.1.9)

2. 예정된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5. 청문실시
   - 일 시 : 2022. 5. 3.(화) 14:00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1층(구월동) 택시물류과

   - 담 당 자 : 택시물류과 송영국(032-440-3873)
6.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9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소재지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엘에스티에스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140호)	박상광	2021. 1. 20.	소재지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249번길 94, D동 2층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3로 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00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등록일	구분
제2022-0-인천광역시-6호	영종충연 영종봉사단	윤호준	인천광역시 중구 월촌길 22, 202호	◦ 영종지역 주변의 해양 봉사활동 등 환경봉사 활동 및 교육봉사활동 등	2022. 4. 7	신규 등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00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주식회사 골드종합건설	구형회	2022. 4. 8.	인천220008	351,000,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89, 1001호 (고잔동, 남동테크노타워)	

2022년 4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20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적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4.8.~2022.4.22.(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2년 4월 29일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부과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차량	체납본세	반송사유	비고
1	000330	이*한	인천광역시동구 봉수대로96번길 59 (송림동)	2021.6.24.07:45	중구 북성동 월미로 이동3반	폭 0.25미터 초과(총폭 2.75미터)	서울07가8562	300,000	반송(이사감)	
2	000341	이*규	인천광역시서구 용두산로13번길 12 , 102동 606호 (심곡동, 삼성아파트)	2021.7.2.15:47	서구 공촌동 경명대로 이동4반	폭 0.28미터 초과(총폭 2.78미터)	인천83바9206	300,000	반송(수취인불명)	
3	000354	김*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277 , 107동 1202호 (창원감계아내에코프리미엄)	2021.7.14.10:03	계양구 계산동 장제로(이동5반)	폭0.98미터 초과(총폭 3.48미터)	경남99바9744	1,000,000	반송(폐문부재)	
4	000399	박*호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51-14 , 102동 1702호 (금흥동, 공주신금우남퍼스트빌)	2021.8.10.06:00	서구 원창동 북항단지로 이동3반	축하중3.65톤 초과(축하중13.65톤)	경북98아9258	800,000	반송(폐문부재)	
5	000437	양*은	충청북도 음성로 학예로 55 (LH아파트) 505동 1101호	2021.9.3.04:55	서구 신현원창동 북항로120번길 이동5반	축하중2.15톤 초과(축하중12.15톤)	충북98바2486	800,000	반송(폐문부재)	
6	000438	김*진	광주광역시북구 호동로73번길 24 (문흥동 삼부빌라) B동 203호	2021.9.3.05:08	서구 신현원창동 북항로120번길 이동5반	축하중2.10톤 초과(축하중12.10톤)	전남98자5001	800,000	반송(폐문부재)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1호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22.1.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과 달리 사용되던 용어를 일치시킴과 동시에 자구 수정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함(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나. 상위법령과 불일치 용어를 정비함(안 제6조)

○ 입회, 입회인 → 참관, 참관인

다.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의 삭제

○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인준(전화번호 032-440-2503,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happyforever@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로, “기준 및 절차,”를 “기준, 절차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사무인계”로, “인수인계”를 “업무의 인계·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 등”을 “규칙”으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를 “것은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사무인계서 등의 작성)”을 “(사무인계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인계할 사항”을 “사무인계사항”으로,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를 “따라 작성되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대하여는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를 “업무”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를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본부장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해당부서에서”를 “소관부서의 장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무인계 등의 참관)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

에 따른 참관인은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로 한다.

② 공무원 업무인계·인수의 경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경우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③ 같은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참관인은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을 “(업무의 인계·인수 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인계인수”를 “업무의 인계·인수”로, “인계인수”를 “인계·인수”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를 “업무”로, “불분명하여 그대로”를 “불분명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를 “제2항에 따른”으로, “거부”를 “인계자가 거부”로, “인계인수”를 “인계·인수”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를 “(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또는 구역변경 시의 인계·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를 “폐지·설치· 분리·합병 또는”으로, “관련업무”를 “관련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를 “기구의 통폐합이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적정한”을 “적절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무 인 계 사 항

항 목
1. 사무인계서(표지) 2. 주요사업 추진 현황 3. 주요지시사항 목록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등) 4. 보유기록물 목록 5. 재산조서 6. 물품내역 6-1. 관사비품 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6-2. 사무용비품 목록 6-3. 도서 목록 7. 장비내역 7-1. 행정장비 목록 7-2. 건설 및 그 밖의 장비 목록 8. 차량 현황 9. 채권·채무조서 9-1. 채권조서 9-2. 채무조서 10. 세입세출예산현계표 10-1. 세입예산현계표 10-2. 세출예산현계표 10-3. 일상경비현계표 10-4. 국비세출예산현계표 11.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12.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13. 적립금 조서 14.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15. 보조금 수지현계표 1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사 무 인 계 서

인 천 광 역 시

○ ○ ○ 사 무 인 계 서

1.   년   월   일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함.

2. 인계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 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 명 (인)

○ 참관인 : 직 위 성 명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9조-- 기준, 절차 및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ㆍ2. (생 략) ② 시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① -------------------------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사무인계 --------------------------------- 업무의 인계·인수-------------. 1.ㆍ2. (현행과 같음) ② --- 규칙--------------- 것은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
제3조(사무의 인계시기) ①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제3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①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대하여는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인계서의 작성) ① ------------------------- 사무인계사항--- 따라 작성되어야 ------------------------. ------- 업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	③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본부장이 작성하여야 한다.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신 설>	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① (생 략)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② ------------------------ -- 소관부서의 장이 -------- -------------------------- -----------.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 등의 참관)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로 한다.
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	

서ㆍ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실ㆍ국ㆍ본부에서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업무인계·인수의 경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경우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③ 같은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참관인은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	제7조(업무의 인계·인수 거부 등)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업무의 인계·인수---------------------------------인계·인수---------- 지체 없---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② ------ 업무-------------------------------- 불분명하여 ---.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인계자가 거부-- 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 · 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또는 구역변경 시의 인계·인수) ① ---------------------- 폐지·설치·분리·합병 또는 -------------------------- 관련 업무 ------------------------------------.
② 인천광역시내에 있어서 기구	② 기구의 통폐합이나 업무---

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국·본부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 규칙에서 -- 적절한 -------------------------------.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4조(사무인계)** ① 법 제119조에 따라 퇴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 등 재산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수입·지출의 현재 상태를 계산한 표)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

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5조 각 호의 사항 중 사무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 **제68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③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않게 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⑤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분류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45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2조 (대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행정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행정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일치시키는 사안으로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김 재 범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35호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예정)의 시행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인천광역시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안 제3조)

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업무 지정 및 사업 정보 공지에 대해 정함(안 제6조, 별표 1)

다. 인천광역시 소속 공직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각종 신고·제출 서식 및 신고사항 조치 후 결과통보서 등을 정함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여부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정함

라. 위반행위 신고서 및 처리결과의 통보서, 이의신청서 등 법 위반 행위 신고 관련 필요 서식 등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 별지 제12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

마.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21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감

사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선아(전화번호 032-440-3184, 팩스번호 032-440-8623, 전자메일 sa072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인천광역시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공직자와 이에 파견된 공직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시 감사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를 포함한다)의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은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시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시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시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시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시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시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시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시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시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시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

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개발제한 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9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	지구계획의 승인
4	공항시설 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6	국방·군사시설 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7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법률」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8	기업도시개발 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9	마을정비구역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10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11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2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第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第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第101조의3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3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第41조	혁신지구의 지정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第46조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4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第10조	마리나항만 구역의 지정
			第13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5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第25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第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6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第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第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의 지정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계획의 작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계획의 승인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9	산업단지개발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제18조 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 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20	역세권개발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제13조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제27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2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3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24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25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제31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26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27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8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9	항만재개발 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30	혁신도시개발 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11조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 [별지 제1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table>
<tr><td rowspan="2">신고·신청인</td><td>성명</td><td>소속</td><td>직위(직급)</td></tr>
<tr><td colspan="3">① 담당 업무</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td><td>성명</td><td>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td></tr>
<tr><td>연락처</td><td>② 사적이해관계</td></tr>
<tr><td colspan="2">③ 관련 직무</td></tr>
<tr><td colspan="2">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td></tr>
</table>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 ]보유자 [ ]매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주소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부동산	유형 [ ] 토지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건물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취득(예정)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인천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인천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기타(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군 구

강화군공고 제2022-524호

강화군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공인을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7.

강 화 군 수

○ 재등록 공인

구분	공인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신조(등록)사유	사용일
재등록	제1민원사무전용 강화읍장인		한글 전서체 2.1㎝×2.1㎝	통합민원 발급기 교체에 따른 등록	2022.4.8.
재등록	제3민원사무전용 강화읍장인		한글 전서체 2.1㎝×2.1㎝	통합민원 발급기 교체에 따른 등록	2022.4.8.

○ 폐기 공인

구분	공인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폐기사유	폐기일
폐기	제1민원사무전용 강화읍장인		한글 전서체 2.1㎝×2.1㎝	통합민원 발급기 교체에 따른 폐기	2022.4.8.
폐기	제3민원사무전용 강화읍장인		한글 전서체 2.1㎝×2.1㎝	통합민원 발급기 교체에 따른 폐기	2022.4.8.

기 타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39호

하천점용(신규)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신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아라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서부발전(주)
 - 주 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379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목상동 77-18외 14필지(목상교 인근)
 - 면 적: 223.4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공업용수 관로 매설
 - 내 역: 관로매설(D560), L=212.8m(비굴착 : 지향성압입 공법)

5. 점용기간: 2022.04.07. ~ 2027.06.30.

6. 공사기간: 2022.04.07. ~ 2022.06.30.